

LH · K-water 간이종심제 특례 설명회

2019. 10

|| 목 차 ||

□ LH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설명자료	3
--------------------------------	---

□ K-water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설명자료	23
-------------------------------------	----

〈붙임〉

1. LH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31
--------------------------------	----

2. K-water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65
-------------------------------------	----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설명회



순 서

I

도입배경 및 평가체계

II

평가항목 세부사항 [수행능력평가 등]

III

평가항목 세부사항 [가격심사 등]

IV

Q & A 및 향후계획

Ⅰ 도입배경 및 평가체계



1. 도입배경

- ❖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19.1.4)의 일환으로 기술중심의 낙찰제도 도입을 발표
- ❖ (대상사업) 적격심사 대상 공사 중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행
 - * 기획재정부 특례(‘19.10월 승인)기준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예정
- ❖ (가이드라인) 중소기업의 수주영역임을 감안하여 기존 중심제 대비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덤핑방지 등을 위한 가격심사기준은 강화
 - * 기획재정부에서 관계기관 T/F회의(‘19.4월 ~ 7월)을 거쳐, 시범사업(안) 확정
- ❖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 보완 후 계약예규 제정 등 예정
 - * 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17개 지구 시범사업추진 예정

2. 간이종심제 평가체계

1) 입찰금액 : 균형가격* 을 산정하고 입찰금액 심사 (50점)

* 균형가격은 입찰금액 상위20%, 하위 20% 제외한 투찰금액의 평균금액

2) 공사수행능력 :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하도급관리계획적정성, 기술능력,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 등 6개 항목 (50점)

3) 사회적책임 : 건설인력, 공정거래, 건설안전, 지역경제기여 [+2점]

4) 계약신뢰도 :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5) 낙찰자 결정 : [입찰금액(50)]+[공사수행능력(50점)+사회적책임(가점2)]
+[계약신뢰도(감점)] →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중소기업 수주영역을 감안하여 PQ심사는 생략하되, 경영상태심사는
공사수행능력심사에 포함하여 적격/부적격의 방식으로 평가

3.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20
		배치 기술자(현장대리인)		10
	역량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하도급 시행비율	4
			하도급 금액비율	4
			하도급 시행계획	2
			소계	
		기술능력 평가		5
		규모별 시공역량		4
		공동수급업체 구성		1
	소 계			(5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적격 / 부적격	
입찰금액 (50점)	금 액			(50)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0 ~ -2
사회적 책임 (가점 2.0점)	건설인력 고용			0.6
	건설안전			0.4
	공정거래			0.4
	지역경제 기여도			0.6
	소 계			(2.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0.5

Ⅱ 평가항목 세부사항 [수행능력평가 등]



1. 공사수행능력

1 시공실적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최근 5년간의 동일 업종별 공사실적	실적금액(백만원) * 입찰공고 시 명시	20	평점 = 실적계수 × 20 (단, 평점상한은 20점)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 (공사예정금액×5)

- 1) 공사적격심사와 동일한 평가방식(LH PQ기준 별표3)
- 2) 업종별이란 건축, 토목, 조경 등으로 구분되며, 복합공종의 경우 (공동주택- 토목·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구분계산 후 합산하되, 공종별 평점상한은 공종별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1. 공사수행능력

2 배치기술자 심사

- 실제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경력을 평가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 수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10	• 점수 = (배점) × [(A/(365*6년)) + (B/(365*20년))] - A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 - B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기타 참여경력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동일공종그룹의 세부 정의는 입찰공고문을 통해 명시

(예시) 배치기술자 심사 시 “동일업종” 은 건축이고, “동일공종그룹” 은 주거시설 중 아파트입니다. _ 아파트공사 [예]

2) 현장대리인은 최초의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날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동일공사(공종그룹)의 분류

업종	공종그룹	동일공사	동일공사 세부류
토목	교통 시설	교량	업종공사에 포함된 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초장대교량,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교량 등
		터널	NATM, TBM(SHIELD포함), 침매터널, 기존 지하철 하부시공,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터널 등
		기타	도로, 지하차도,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지하차도 등
	수자원 시설	댐	필댐, 콘크리트댐, 사력댐, 어도(魚道) 등
		하천	하구둑, 수문(통문포함), 제방, 보 등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 포함), 배수처리시설, 상수도(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 등
	기타 토목	부지조성 등	연약지반 등
건축	주거	아파트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주거면적 70%이상)(세대수, 금액, 연면적, 특수공법 등)
		기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독·다중·다가구주택, 공관(세대수, 연면적, 특수공법 등)
	비주거	철도역사	지상역사, 선상역사, 선하역사, 지하역사 등
		교육·복지	교육 및 복지시설
		기 타	초고층빌딩, 클린룸, 내진/면진구조, 태양열집열판, 기존건물 연접시공 등
산업 환경	산업 환경	-	제철·석유화학 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환경오염방지·하수·폐수처리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조경	조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 등의 조경공사

1. 공사수행능력

3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시행비율	하도급 시행비율 (총하도급예정금액/총도급액)	4	A:40%이상 B:30%이상	4.0 3.0
	하도급 금액비율	하도급 금액비율 (총하도급계약예정금액/총하도급예정금액)	4	A: 82%이상 B: 80%이상 C: 77%이상	4.0 3.0 2.0
	하도급 시행계획	당해공사지역 하수급업체와 계약비율 (당해 공사지역 하수급업체 하도급예정금액/ 총하도급예정금액)	1	A:20%이상 B:10%이상	1.0 0.5
		하도급대금 지불계획	1	A:20%이상 B:10%이상	1.0 0.5
소계			10		

- 1) 공사적격심사와 동일한 평가방식 (LH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1-2)
- 2)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단일공종 공사는 해당사항을 만점으로 평가

- 10 -

1. 공사수행능력

4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LH에서 시행한 각 분야별 시공평가(품질평가)에 대한 결과 반영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기술능력 평가	LH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 점수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5	A: 90점이상 B: 88점이상 C: 85점이상 D: 83점이상 E: 80점이상 F: 80점미만	5.0 4.5 4.0 3.5 3.0 2.5

- 1) 단지조성, 도시기반, 건축, 조경공사는 시공평가점수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품질평가 점수를 적용한다 _ 예) 입찰공사가 조경공사의 경우 조경공사 시공평가점수만 반영
- 2) 최근 2년간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88점을 적용

- 11 -

1. 공사수행능력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 시 명시	4	점수 = 기본배점(3.5)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 업체 상·하위 등급별 점수*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업체등급(시공능력평가액)별 점수표

발주등급 \ 업체등급	1 등급 (330억~900억)	2 등급 (170억~330억)	3 등급 (100억~170억)	3등급 이하
1 등급 (220억이상~300억미만)	0.5	0.45	0.4	0.35
2 등급 (150억이상~220억미만)	0.4	0.5	0.45	0.4
3 등급 (100억이상~150억미만)	0.3	0.4	0.5	0.45

* 상·하위 등급은 해당 간이중심제에서만 한정되어 표현된 사항임

- 12 -

1. 공사수행능력

6 공동수급체 구성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	
		10% ~ 25%미만	25%이상
22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0.60	0.80	1
150억원이상 ~ 220억원미만	0.70	0.85	1
110억원이상 ~ 150억원미만	0.85	1	

- 공동수급체 구성 점수(배점 1점)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

- 13 -

2.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은 건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심사항목으로 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에 가점 (+2점)

분야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 근거자료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0.6	고용탄력성점수 - 근로기준법 미준수	.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0.4	사망만인율 점수 + 재해율점수의 합	.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	0.4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법 미준수	. 국토부 . 공정거래위원회
	지역경제	0.6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	

* 전문공사(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등)의 경우 상기 항목으로 평가가 불가하며, 별도 심사기준 수립예정

2. 사회적 책임

1 건설인력고용

심사지표	배점	등급	점수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표준화점수의 해당범위 (상대평가)	0.6	A. 상위 10%	0.60
		B. 상위 10%초과 상위 25%	0.48
		C. 상위 25%초과 상위 50%	0.36
		D. 상위 50%초과 상위 75%	0.24
		E. 상위 75%초과 상위 90%	0.12
		F. 하위 10%	0

- 고용탄력성 표준화점수 :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하며, 상대평가로 등급별(1~6등급)점수 부과 _ 나라장터 '신인도' 에서 확인가능
- 상기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미준수(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처리 함

* 고용탄력성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점수(0.12~0.6점) = 건설인력고용 최종점수

2. 사회적 책임

2 건설안전

구분	배점	점수산식	비고
사망만인율	0.2	점수 = $0.2 - 0.1 \times \frac{\text{해당업체 가중평균 사망만인율}}{\text{건설업 가중평균 사망만인율}}$	- 3개년도 가중평균 - 해당업체의 평균이 2배 이상일 경우 0점
재해율	0.2	점수 = $0.2 - 0.1 \times \frac{\text{해당업체 가중평균 재해율}}{\text{건설업 가중평균 재해율}}$	

○ 사망 만인율 = $10,000 \times \frac{\text{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 재해율 = $100 \times \frac{\text{재해자수}}{\text{상시근로자수}}$

* 상기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0.04~0.16점)"에 따라 감점처리 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해 근거자료 확인)

- 16 -

2. 사회적 책임

3 공정거래

-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에서 공정거래준수 여부"를 차감하여 산정함
-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 - 나라장터 '신인도'에서 확인가능

등급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95점 미만	95점 이상
점수	0.00	0.08	0.16	0.24	0.32	0.40

- 공정거래준수 위반사항
 - 입찰담합, 하도급법 위반행위, 기타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 17 -

2. 사회적 책임

4 지역경제 기여도

-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의하여 산정함
- 참여지분 30% 이상 시 배점한도인 0.6점 가점부여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서는 해당 가점 적용을 제외함

3. 계약신뢰도

분야	심사내용	감점기준	비고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위반 건당 -0.5	계약위반한 건에 대해 향후 LH 간이중심제 입찰시 감점 (2년간)

○ 관련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② 공사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함

「간이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4조(입찰공고 시 명시사항)

- ③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기간의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Ⅲ 평가항목 세부사항^[가격심사 등]



1. 경영상태

1 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 도입배경

- ① 중소기업 업체 수주영역임을 감안하여 PQ심사를 생략
PQ심사항목은 생략하여 입찰절차를 단순화하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장치로 경영상태 평가 도입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와 동일하게 Pass/Fail로 평가

「적격요건」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 이상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 이상

「간이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0조 제3항(입찰공고 시 명시사항)

- ③ 종합심사점수는 경영상태부분에 대한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산정하며, 경영상태부분에 대한 적격요건 미충족시 종합심사점수 산정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2. 입찰금액

1 입찰금액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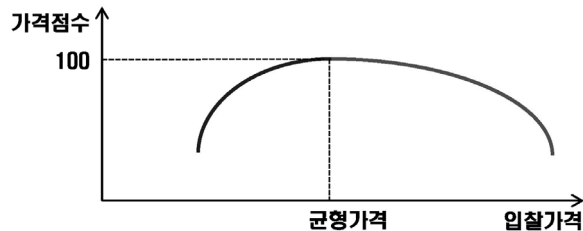
○ 균형가격 산출 : 입찰자 상위20%, 하위20% 를 제외한 산술평균금액

$$i) \text{ 균형가격 미만 입찰금액 심사점수} = \sqrt{1 - A \times \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 \right)^2 \times 50}$$

ii) 균형가격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

$$iii) \text{ 균형가격 초과 입찰금액 심사점수} = \sqrt{1 - B \times \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 \right)^2 \times 50}$$

주) A, B계수는 동일하며 아파트건축공사는 1, 아파트건축공사 외의 공사는 0.2로 한다.



- 22 -

2. 입찰금액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

○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담보하기 위한 가격심사기준 적용

$$① \text{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 = -A \times \left(1 - \frac{1}{100} [\text{단가점수}] \right)$$

• 세부 공종별로 기준단가*의 ±19% 이내인 경우 100점, 그 외는 0점으로 평가

* 고정비용에 관계없이 동일기준 적용

*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

• 기존 종합심사낙찰제 단가심사기준 중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기준 삭제

* 단가심사기준 일원화

- 23 -

2. 입찰금액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

- 적절한 공사비 산정을 담보하기 위한 가격심사기준 적용

② 세부공종 기준단가(감점)

- 1방식 : 세부공종 예정단가와 세부공종에 대한 균형단가를 합산한 전체 금액에 대해 사정율을 적용
 - 기준단가 = [설계가 × 예가율 × 90%] + [입찰자 평균단가(균형단가 × 10%]
 - 가중치변경 : 기존(7:3), 변경(9:1)
- 2방식 :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단가(사정율 적용) 100% 적용

2. 입찰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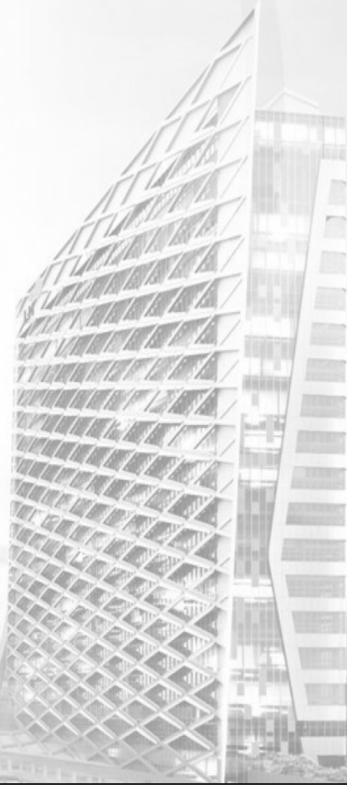
3 동점자 평가 기준

- 가격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수인인 경우 낙찰자 결정

가격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 1) 공사수행능력 점수(사회적 책임 포함) 우수자
-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 3)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금액이 적은 자
- 4) 추첨의 순으로 1순위 낙찰자 결정

> Ⅳ Q & A



□ 간이중심제 Q & A

Q. 배치기술자 심사시 현장대리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 국토부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에서 규정하는 현장대리인 경력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경우(기술자경력증명서에 현장대리인으로 명시)에만 평가 _ 현장소장 등 기타 사항 불인정

Q. 배치기술자 심사시(경력일) 근무일수 산정기준은?

☞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참여일' 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Q.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가 간이중심제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의 가점 획득이 가능한지 여부

☞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평가에서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간이종심제 Q & A

Q. 입찰금액 심사에서 심사점수 산정시 소수점 처리기준은?

☞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세부심사기준 제1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합니다.

Q. 세부심사기준 [별표3]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나. 단가 심사 7) 및 9)에서 동일한 업종 내 코드명이 동일한 세부공종에서 업종 내의 의미는?

☞ 아파트 공사 등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 토목, 기계, 조경이며, 토목 공사는 토목을 의미합니다.

□ 간이종심제 Q & A

Q. 세부심사기준 제7조제1항의 각 호에서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이, 1000분의 997, 100분의 80, 100분의 50(or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균형가격 산정에 제외하고 낙찰자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인지?

☞ 1000분의 997, 100분의 80, 100분의 50(or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균형가격 산정에 포함되며, 낙찰자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 예 시

구 분	LH 기준금액	경계금액	균형가격제외	균형가격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0,000	997,000 (1000분의 997)	997,000 미만	997,000 이상
직접노무비 단가	60,000	48,000 (100분의 80)	48,000 미만	48,000 이상
세부공종 입찰단가 합계	50,000	25,000 (100분의 50) or 75,000 (100분의 150)	25,000 미만 or 75,000 초과	25,000 이상 ~ 75,000 이하

□ 간이중심제 Q & A

Q. 세부심사기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LH에서 정한 세부공종 내 각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설계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서 음(-)의 금액 의미는?

☞ 각 비목의 설계금액(재료비단가 × 수량, 노무비단가 × 수량, 경비단가 × 수량)이 음(-)의 금액인 경우를 의미하며, 재/노/경 단가가 양(+)이라도 수량이 음(-)이면 음(-)의 설계금액에 해당됩니다.

○ 예 시

세부 공종 명	수량	입찰금액						설계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재료 비	노 무 비	경 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고 자 재	-100	200	0	0	-20,000	0	0	199	0	0	-19,900	0	0
철근 가공 (보 통)	2	-500	4,500	5,500	-1,000	9,000	11,000	-600	6,000	7,000	-1,200	12,000	14,000

• 각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음(-)의 설계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변경없이 반영해야 함을 유의

□ 간이중심제 Q & A

Q. 단가 심사에서 동일한 업종 내 세부공종의 단가를 다르게 작성한 경우 0점 처리 기준은?

☞ 동일한 업종 내 세부공종(일위코드가 같은 최소단위 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합니다.

Q. 세부심사기준 제2조제9호의 “세부공종”과 제2조제11호 및 [별표3]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시 “세부공종”의 차이는 무엇인지?

☞ 세부심사기준 제2조제9호의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이하 “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으로서, 동일한 일위코드라 하더라도, 건물 구분(아파트, 판매시설, 복지시설 등) 및 동별 구분(101동, 102동) 등에 따라 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별도로 표시됩니다. 세부심사기준 제7조(균형가격 등의 산정)에 적용합니다.

제2조제11호 및 [별표3]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시 “세부공종”은 업종별(건축, 토목, 기계 등) 일위코드가 같은 최소단위 공종을 말합니다. 단가 심사에 적용합니다.

> **Ⅳ. 간이형 중심제 시범사업 목록**

공사명	공사유형	추정가격	공고 시기
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공공건축	148억원	'19.10
포항블루밸리 A3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건축	171억원	'19.10
천안두정 행복주택건설공사 1공구	건축	270억원	'19.10
양산사송 지구외 송수.오수관로 설치공사	토목	167억원	'19.11
동탄(2)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및 연결보행로 공사	토목	264억원	'19.12
전주효천 삼천횡단교량 건설공사	토목	150억원	'19.12

◦ 예정공사 및 발주내역은 우리공사 사업계획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감사합니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간이형 종합심사제도 안내



순 서

I. K-water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개요

II. 세부 평가기준

III. 시범사업 현황

1. K-water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개요

가격중심의 적격심사 낙찰제의 대안으로 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현행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준용
- ☐ 중소기업 수주 영역임을 감안, 수행능력 기준 완화

현 행		개 선[안]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제	100억 원 미만	적격심사제
		100억 원 ~ 300억 원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 [가격 + 공사수행능력 + 사회적 책임]
300억원 이상	공사 종합심사제	공사 종합심사제	

2. 평가 기준

[공사 종합심사 낙찰제(300억 이상)]

심사 분야	평가 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동일공사 시공실적	15점
		매출액 비중	4점
		배치 기술자	14점
	역량	시공평가 점수	15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규모별 시공역량	-
	소 계		100%
입찰가격 (50점)	가 격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하도급계획)		감점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0.4점
	공정거래		0.6점
	건설 안전		0.4점
	소 계		0.6점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300억~100억)]

심사 분야	평가 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전문성	동일공사 시공실적	22점
		<삭제>	<삭제>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삭제>	<삭제>
		공동수급체 구성	3점
		규모별 시공역량	5점
	소 계		100%
입찰가격 (60점)	가 격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하도급계획)		감점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0.4점
	공정거래		0.6점
	건설 안전		0.4점
	소 계		0.6점

2-1. 주요 평가 내용

[평가방법 및 체계]

☐ [수행능력] 중·소규모 공사특성을 반영, 대기업 위주 평가기준 완화

- 매출액비중 · 시공평가 결과 등 평가 제외
 - 시공 실적 : 적격심사 기준과 동등 수준
 - 배치기술자 : 현장대리인만 평가
 - 재직기준일 : 종심제 서류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생략 [경영상태는 평가, Pass/Fail의 기준]

☐ [시공역량] 발주공사 대비 상위 등급 업체 참여시 감점

- 기업규모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등급] 유사한 중소기업간 경쟁 유도

2-2. 주요 평가 내용

[평가방법 및 체계]

☐ [가격 평가] 현행 종심제 가격 산식을 준용

- 균형가격 산정시 상 · 하위 20% 배제, 균형가격 상 · 하위 동일하게 감점
 - 가격계수 : [현행] A:1, B:0.5, [간이종심제] A,B : 0.5
- 공종별 기준단가 및 단가심사
 - 기준단가 : 가중치[설계 : 균형단가] 조정 [7:3 → 9:1]
 - 단가심사 : 덤핑방지를 위해 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 확대 [$\pm 18\%$ → $\pm 19\%$]

☐ [하도급계획] 적격심사 평가 기준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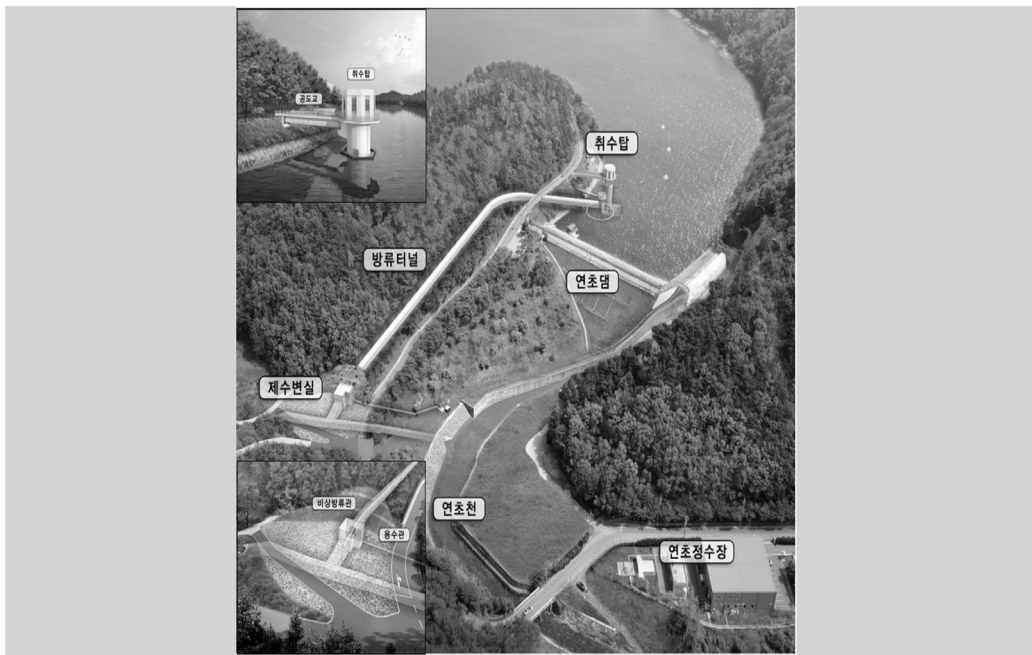
☐ [동점자 처리] 합산점수 고득점→저가 입찰금액 →추첨 순

☐ [사회적 책임] 고용, 안전, 공정거래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가점 2점)

-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만점기준 조정 [20% → 30%]

시범사업 현황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사업 목 적

- 취수탑 및 비상방류시설 등의 신설, 안계댐의 항구적 안전성 확보

사업 개 요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일원(안계댐)
- 공사비 : 308억원 (36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시공능력),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

구 분	내 용
시설개요	- 본체 심벽 보강 (마이크로 시멘트 침투그라우팅, L=222m. 2~3열)₩ - 취수탑 H=21.9m(외경 7.0m) NATM터널(수정마제형, 91.7m) - 비상방류관 D800mm(L=122m) 용수공급관 D1350mm(L=143m) - 기존취수탑(2개) 단면 보강(기초 1.2 ~ 2.2m, 벽체 0.5m, FRP 보강공법) - 강화접합유리(H=1.7m) : 본댐(L=232m), 부댐 (L=280m) - 여수로 도로횡단 암거 승상 (증고 1.35m) 등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심사기준)
- 제4조(입찰공고)
-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 제7조(균형가격 산정)

제2장 종합심사 방법

- 제8조(심사서류의 보완)
- 제9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 제10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 제11조(낙찰자 결정)

제3장 기타

- 제12조(결격사유 등)
- 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 제14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 제15조(재심사)
- 제16조(그 밖의 사항)

부 칙

[별표1]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별표5] 제출서류 목록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대한 특례를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설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3.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LH 또는 입찰자가 작성하여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4.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5.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원가에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6.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초기점검 포함), 공

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공사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 등을 말한다.

7. “피에스(PS, Provisional Sum)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자료(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수량,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8.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피에스 항목 등 현장설명서의 입찰자 유의사항에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9.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및 [별표3]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시 세부공종은 현장설명 시 교부한 업종(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별 일위대가 코드(CODE)를 말한다.
10.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균형단가”는 제7조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2. “추정물량”이란 LH가 현장설명 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13. “입찰물량”이란 LH가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입찰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14.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LH가确定的한 물량을 말한다.
15. “참여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을 말한다.
16.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 특례에 따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는 [별표1]에 따라 실시한다.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입찰공고) LH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간이형 종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기간의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5.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LH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3.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5.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② LH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

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LH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별표5]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별표5]의 서류는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4.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 ② LH는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서류의 제출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 ③ 입찰자는 개찰결과 입찰금액점수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심사서류 제출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제출하고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LH는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 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LH에서 정한 세부공종 내 각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설계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변경 없이 반영하여야 함.
5.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피에스(PS, Provisional Sum)금액이 물량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6.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LH에서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단,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LH가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7.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초기점검 포함),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8.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LH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9.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주요자재 단가에 의한 세부공종의 비목별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세부시행요령에서 주요자재로 명기한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0.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LH가 작성한 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보다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1.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합계가 LH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 합계보다 100분

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2. <삭제>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서의 동일한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순위에 포함되는 개수까지만 제외한다.

제2장 종합심사 방법

제8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LH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LH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LH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종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대한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수급인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지급자재비를 제외하며, 이

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 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④ 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종합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 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③ 종합심사점수는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신정하며,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 미충족시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1. 경영상태부분은 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

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G2B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이 2개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심사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공고일 이전에 신용평가등급을 평가받은 경우로서 마감일까지 G2B에 등록된 신용평가등급 포함)으로 하며, 공고일 이전까지 평가받은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경영상태부문 적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경영상태부문 평가를 신청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이행방식포함)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평가자료가 없는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 점수의 산정은 입찰금액점수(단가심사점수 포함)가 높은 순으로 낙찰 가능성이 있는 입찰자에 한하여 순위별로 순차로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 계약신뢰도 점수를 심사하며, 1순위자가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된 경우 차순위자에게 심사일정등을 별도로 통보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업체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분야를 심사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점수는 소멸된 자의 자료를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심사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자료로 심사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자료로 심사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 LH는 제10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4. 추첨

③ LH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결격사유 등) LH는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LH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LH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 LH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LH는 낙찰자 결정전에 균형가격, 기준단가, 입찰금액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LH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LH는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금액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조건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참여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주된 공사 출자비율(%)을 주된 공사의 100% 대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로 환산한 비율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출자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주계약자의 환산한 출자비율(%)에서 가감하여 100%로 변경하여 산정한다.

2. 각 세부항목별 심사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율로 결정하되 대표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시공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0.)

제1조(적용례)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특례에 따라 2019.00.00부터 2019.00.00까지 입찰공고 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1] 분야별 심사방법 및 배점기준

□ 공통 (주거시설 및 비 주거시설 포함)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20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10
	역량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하도급 시행비율	4
			하도급 금액비율	4
			하도급 시행계획	2
		소계		(10)
		기술능력 평가		5
		규모별 시공역량		4
		공동수급체 구성		1
	소 계			(5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적격/부적격
입찰금액 (50점)	금액			(50)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0 ~ -2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고용			0.6
	건설안전			0.4
	공정거래			0.4
	지역경제 기여도			0.6
	소계			(2.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0.5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심 사 항 목	심사요소	배 점	점수산정
최근 5년간의 동일 업종별 공사실적	실적금액(백만원) *입찰공고시 명시	20	$\text{평점} = \text{실적계수} \times 20$ (단, 평점상한은 20점) $\text{※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공사예정금액} \times 5)}$

※ 주 :

- 1) 공사예정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2)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 시 토목·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구분계산 후 합산하되, 공종별 평점상한은 공종별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공종별 시공비율 계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 점	점수산정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경력	10	$\text{점수} = (\text{배점}) \times \left(\frac{A}{(365 \times 6\text{년})} + \frac{B}{(365 \times 20\text{년})} \right)$ A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 B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기타 참여경력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주 :

- 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시공 관리책임자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경력을 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LH는 현장대리인의 특수한 공사 참여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이하 “동일·유사공사”라 한다)를 지정(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text{현장대리인 점수} = \left(\frac{\text{현장대리인 근무일수(A)}}{6\text{년} \times 365} + \frac{\text{기타직위 근무일수(B)}}{20\text{년} \times 365} \right) \times \text{배점}$$

1-1) 동일공사 분류

업종	공종그룹	동일공사	동일공사 세분류
토목	교통 시설	교량	업종공사에 포함된 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초장대교량,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교량 등
		터널	NATM, TBM(SHIELD포함), 침매터널, 기존 지하철 하부시공,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터널 등
		기타	도로, 지하차도,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지하차도 등
	수자원 시설	댐	필댐, 콘크리트댐, 사력댐, 어도(魚道) 등
		하천	하구둑, 수문(통문포함), 제방, 보 등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 포함), 배수처리시설, 상수도(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 등
	기타 토목	부지조성 등	연약지반 등
건축	주거	아파트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주거면적 70%이상) (세대수, 금액, 연면적, 특수공법 등)
		기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독·다중·다가구주택, 공관(세대수, 연면적, 특수공법 등)
	비주거	철도역사	지상역사, 선상역사, 선하역사, 지하역사 등
		교육·복지	교육 및 복지시설
		기 타	초고층빌딩, 클린룸, 내진/면진구조, 태양열집열판, 기존 건물 연결시공 등
산업 환경	산업 환경	-	제철·석유화학 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환경오염방지·하수·폐수처리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	조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 등의 조경공사

- 2) LH는 현장대리인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 한다.
- 3)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4) 현장대리인은 최초의 종합심사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날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5) 현장대리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에 따른 경력만을 인정한다.

- 6) 공동수급체의 경우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 7) 시공경력은 관련협회(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 8) 현장대리인의 재직기간 등 확인은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 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에 의하여 확인한다.
- 9)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 (1) 현장대리인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2) 현장대리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3) 현장대리인이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단, 해당공사 공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이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잔여공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 (5)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4조제1항에 따라 LH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또는 LH 사유에 의한 공사중단, 착공지연 등이 3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시행비율	· 하도급 시행비율 (총하도급예정금액/ 총도금액)	4	A:40%이상 B:30%이상	4.0 3.0
	하도급 금액비율	· 하도급 금액비율 (총하도급계약예정금액/ 총하도급예정금액)	4	A: 82%이상 B: 80%이상 C: 77%이상	4.0 3.0 2.0
	하도급 시행계획	· 당해공사지역 하수급 업체와 계약비율 (당해 공사지역 하수급	1	A:20%이상 B:10%이상	1.0 0.5

	업체 하도급예정금액/ 총하도급예정금액)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1	A:20%이상 B:10%이상	1.0 0.5
소계		10		

- 1)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를 말한다.
-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는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호의 하도급 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B, C 중)을 부여한다.
 - ① 총하도급 계약예정금액이 총하도급 예정금액의 82% 이상 일 것
 - ② 총하도급 계약예정금액이 발주자 설계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64% 이상 일 것
- 3) 하도급시행계획 중 “당해공사지역 하수급업체”는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본점이 있는 하수급업체를 말한다.
- 4) 하도급시행계획 중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표 2>의 하도급관리계획에 하수급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 5)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해당 평가요소별 비율산정은 백분율 계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6)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의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7) 계약체결 후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는 발주청 감독자의 심사를 통해 변경 승인토록하며 당초 심사 시 제출된 조건 이상으로의 하수급인 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발주청의 관련지침을 따른다.

4.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기술능력 평가	LH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 점수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5	A: 90점이상 B: 88점이상 C: 85점이상 D: 83점이상 E: 80점이상 F: 80점미만	5.0 4.5 4.0 3.5 3.0 2.5

※ 주 :

- 1) 기술능력 평가는 LH에서 시행한 각각의 분야별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2)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시공 평가한 연도와 그 직전연도(이하 “최근 2년간”이라 함)의 대표수급자로 참여하여 획득한 시공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
- 3) 최근 2년간 시공평가결과가 1회만 있는 경우에는 1회 시공평가결과 적용
- 4) 최근 2년간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8점 적용
- 5) 합병 등의 경우 합병전 업체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4	점수 = 기본배점(3.5)+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상·하위 등급별 점수

※주 :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점수는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2) 위 산식의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상·하위 등급별 점수”는 해당 공사 규모별 등급(이하“발주등급” 이라한다)과 참여업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이하“업체등급” 이라한다)이 같을 경우 “0.5점”을, 다를 경우에는 발주등급과 업체등급에 해당하는 등급별 점수를 적용

한다.

-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규모별 시공역량심사는 구성원별 시공역량심사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 4) 발주등급 및 업체등급

발주등급			업체등급	
등급	토목공사 (추정가격)	건축공사 (추정가격)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건축,토목)
1	22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22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1	330억원이상 ~ 900억원미만
2	150억원이상 ~ 220억원미만	150억원이상 ~ 220억원미만	2	170억원이상 ~ 330억원미만
3	100억원이상 ~ 15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150억원미만	3	100억원이상 ~ 170억원미만

- 5)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상·하위 등급별 점수

업체등급 발주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3등급 이하
1 등급	0.5	0.45	0.4	0.35
2 등급	0.4	0.5	0.45	0.4
3 등급	0.3	0.4	0.5	0.45

- 6) 시공능력평가액은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 7)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공종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가격이 기준이 된다.
- 8)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는 해당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심사하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심사한다.
- 9)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심사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	1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에 따른 점수 [점수는 아래의 ※주 : 1)~2)에 의함]

※주 :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 2)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	
		10%~25%미만	25%이상
22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0.60	0.80	1
150억원이상 ~ 220억원미만	0.70	0.85	1
110억원이상 ~ 150억원미만	0.85	1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가.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7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i)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text{입찰금액 심사점수} = \sqrt{1 - A \times \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 \right)^2} \times 50$$

ii) 균형가격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

iii)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text{입찰금액 심사점수} = \sqrt{1 - B \times \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 \right)^2} \times 50$$

주: A계수는 아파트 건축공사는 1, 아파트 건축공사외 공사는 0.2,
B계수는 아파트 건축공사는 1, 아파트 건축공사외 공사는 0.2로 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가.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나. 단가 심사(감점, 일반공사에 한하여 적용)

1) 단가심사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cdot \text{단가심사점수} = -A \times \left(1 - \frac{1}{100} (\text{단가점수}) \right)$$

* A : 입찰금액배점의 20%

2)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4)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5)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LH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 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가장 큰 세부공종 금액이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가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또는 피에스항목은 단가심사 대상 및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 6)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pm 19\%$ 이내인 경우(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 7) 동일한 업종(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 내 코드명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한다.
- 8)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LH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과 제2조제12호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단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경우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LH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을 적용한다.
- 9) 제2조제12호의 균형단가 산정 시 동일한 업종(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 내 코드명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입찰자의 입찰단가는 모든 세부공종의 균형단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 10) 단가심사는 본문 제9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 11) 단가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가.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 년도로 한다.
-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cdot \text{표준화 산식} = (\text{변수값} - \text{평균}) / \text{표준편차}$$

- 6) 고용탄력성 점수는 다음 표에 의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심사지표	배점	등급	점수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표준화점수의 해당범위	0.6	A. 상위 10%	0.60
		B. 상위 10%초과 상위 25%	0.48
		C. 상위 25%초과 상위 50%	0.36
		D. 상위 50%초과 상위 75%	0.24
		E. 상위 75%초과 상위 90%	0.12
		F. 하위 10%	0

나.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 4)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지표	등급	감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 ~ 2건	0.12
	B. 3 ~ 4건	0.24
	C. 5 ~ 6건	0.36
	D. 7 ~ 8건	0.48
	E. 9건 이상	0.60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가.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cdot \text{사망만인율} = \frac{\text{사망자 수}}{\text{상시 근로자 수}} \times 10,000$$

- 1)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2)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업체(B)의 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사망자에서 제외한다.
- 3)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cdot \text{상시 근로자수} = \frac{\text{연간국내공사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월평균임금} \times 12}$$

- 가)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 다)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나.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cdot \text{재해율} = \frac{\text{재해자 수}}{\text{상시 근로자 수}} \times 100$$

- 1)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2) 재해자 수 산출 기준과 방법은 사망자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 3)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2) 종합건설업자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 3)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점수 심사산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배 점	점수 심사산식	비 고
사망 만인율	0.20	$\text{점수} = 0.20 - 0.10 \times \frac{\text{해당업체 가중평균 사망만인율}}{\text{건설업 가중평균 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 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0.20	$\text{점수} = 0.20 - 0.10 \times \frac{\text{해당업체 가중평균 재해율}}{\text{건설업 가중평균 재해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 가중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 1)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0.3+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2(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재해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하며,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에 0.04점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감점	0.04	0.08	0.12	0.16	0.20

마. LH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라.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망만인율 및 재해율 심사는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

- 1) 상호협력평가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한다.
- 2)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 3) 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호협력평가점수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상호협력평가심사점수로 60점 미만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 4)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등급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95점 미만	95점 이상
점수	0.00	0.08	0.16	0.24	0.32	0.40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 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는 범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아래 해당 점수를 감점한다.

심사항목	행위 유형	조치정도	감점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0.10
		B. 과징금 10억미만	0.12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0.14
		D. 과징금 30억이상	0.16
		E. 법인고발	0.18
		F. 법인 및 개인고발	0.20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0.08
		B. 과징금	0.12
		C. 고발	0.16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0.06
		B. 과징금	0.10
		C. 고발	0.12

4)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의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3)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5)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입찰자의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점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이 하되, 만점은 0.6점으로 한다.

$$\cdot \text{점수} = 0.6 \times \frac{\text{지역업체 참여비율}(\%)}{30\% \times \text{조정계수}}$$

- 나. 조정계수는 1로 한다. 단, 해당 공사의 공사규모,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0.5에서 2사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다. 지역업체는 입찰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 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 마.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건의 경우 해당항목의 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별표5](제6조 제1항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비 고
총 괄	1	종합심사신청서	신 청 자	서식 1
	2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신 청 자	서식 2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조달청(G2B)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법원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신 청 자	
	6	사용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사용인감 사용시 생략	신청자 또는 조달청(G2B)	
시공실적	7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서식 3
경영상태	8	신용평가서	신용평가기관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9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계획서	신 청 자	서식 4
	10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1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11-1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 확인서	신청자, 관련기관	
하도급계획 건설인력 고용	12	하도급관리계획서	신 청 자	서식 5
	13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건설인력 고용지수 화면 출력물)	고용노동부	
	14	임금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횡수 확인서(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건설인력 고용지수 화면 출력물)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15	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	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7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	18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19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국토교통부, 관련협회	
기 타	20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주 : 상기 연번에 따라 목록표를 작성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연번순으로 대표자 서류 뒤에 편철

※ 관련 서식은 특례승인후 특례기준에 맞추어 작성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한국수자원공사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 2019.10.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대한 특례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필요한 세부 기준("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우리 공사 또는 입찰자가 작성한 내역서로서 세부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3. "설계내역서"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법정경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원가에 계상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7.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 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8. "피에스(이하 PS, Provisional Sum)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9.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입찰금액 심사를 위해 작성하여야 할 사항 및 유의사항 등 우리 공사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균형단가"는 입찰자의 세부공종 입찰단가(심사대상이 되는 세부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 단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제7조의2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2.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3. "공사참여지분율"이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공동수급체 현황표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을 말한다.
14. "시공비율"이란 제13호에 따른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5. "사업주관부서"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발주설계, 계약체결 후 사업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사업시행부서"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계약체결 후 공정관리, 감독, 준공 등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7. "계약부서"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입찰,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우리 공사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을 말한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간이형 종합심사세부기준 특례의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현장설명의 실시 여부
4.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5.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7.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으로서 고난도 공종(우리공사 「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 별표1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른다.

제5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 우리 공사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며, 현장설명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서
3. 설계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예정가격산정자료), 세부

시행요령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6.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특례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우리 공사는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별표5]에 따라 간이형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입찰공고에 명시함으로써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제출서류가 한국어 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3호 내지 제5호 서류의 제출은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7조(균형가격 산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인 경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설계내역서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단가에 수량을 곱한 합계액.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의 100분의 150초과 또는 100분의 50미만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7. 설계내역서의 PS 항목 금액 또는 음(-)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PS 항목 금액 또는 음(-)의 금액이 다른 경우
 8. 간접노무비,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각각의 구성항목 기준), 일반관리비,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별 입찰금액이 우리 공사가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내역서 금액보다 낮은 경우)
 9.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입찰금액의 내림차순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술평균 결과는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금액의 개수를 산정한 결과는 소수점 아래 단위를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제7조의2(균형단가 산정) ① 균형단가는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 입찰금액

의 세부공종 입찰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금액의 세부공종 입찰단가를 대상으로 해당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개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술평균 결과는 원단위 미만 절사한다.

1.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내림차순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를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라 세부공종 입찰단가 일부를 제외한 후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 대비 65%미만 또는 110%초과인 세부공종 입찰단가는 균형단가 산정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한다. 다만, 상기 세부공종 입찰단가를 추가로 제외한 결과 균형단가 산정대상이 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모두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금액의 개수를 산정한 결과는 소수점 아래 단위를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제8조(기준단가의 산정) 기준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기준단가 :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단가 × 예가산출율 × 90%) + (세부공종별 균형단가 × 10%)
2. 기준단가 산정시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합산 이전 단계에서 각각 절사한다.
3. 예가산출율 = 예정가격 ÷ 설계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4. 예가산출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1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경우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단가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금액의 100%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종합심사 방법

제9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 ③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적격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이상
-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이상
-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④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사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상의 배점한도 점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⑤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 ② 심사항목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을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공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업종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 공동도급의 이행방법, 이행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지서식2>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각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한다.

제13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업체는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추첨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의 통보는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입찰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보일

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에 대한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⑤ 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결격사유"라 한다)에는 종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자 결정 통보일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낙찰자 결정 통보일 전에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을 또는 분담내용 등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종합심사 대상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부서의 장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

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사무규칙, 법, 계약예규,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사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첨부서류 포함)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2019.10.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2019년 12월 31까지 입찰 공고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1]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시공실적		22점
	배치기술자		10점
	규모별 시공역량		5점
	공동수급체 구성		3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점
		하도급계획	0 ~ -2점
	소 계		6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적격/부적격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근로기준법준수	0.4점
		사망만인율 재해율	0.6점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공정거래관련법준수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6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배치계획 위반		위반 건당 0.12점을 '배치기술자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위반		초과비율에 따라 0.1~0.3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시공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서 감점

주)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최근 5년간 동일 업종의 시공실적경험	22	· 동일 업종공사의 누계실적금액 ※ 평가기준(업종 및 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

가. 공사 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공실적 심사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text{시공실적심사점수} = \text{배점} \times \frac{\text{최근 5년간 동일 업종 실적총액}}{\text{해당 발주공사의 설계금액} \times 5}$$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동일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의 분류(이하 이 기준에서 동일)

업종	동일공종그룹	해당 공종
토목	교통	·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	· 댐,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항만
	기타토목	· 택지조성 등 교통·수자원그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건축	주거	·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	· 관람·체육시설 등 주거그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2.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10	· 배치예정인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 기타직위 참여경력

가. 배치기술자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 대리인의 시공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배치기술자는 공고문에서 지정한 날(최초의 종합심사 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 기준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 배치예정인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동일·유사공사”라 한다) 참여실적으로 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동일·유사공사를 입찰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1인)의 시공참여경력 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평점} = \left(\frac{\text{현장대리인 근무일수} \times A}{4\text{년} \times 365} + \frac{\text{기타직위 근무일수}}{5\text{년} \times 365} \right) \times \text{배점}$$

(단,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A : 현장대리인 가중치 (※ 1~3 범위에서 입찰공고시 명시)

- 주) 1. 동일공종그룹명(또는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의 기타직위 참여경력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바.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심사한다.
- 아. 동일·유사공사의 확인은 관련협회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해당공사의 실적증명서류에 의하며, 배치기술자의 소속업체 재직기간의 확인은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 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에 의한다.
- 자. 낙찰자는 실제 계약 이행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부서의 장의 승인 하에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 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단, (5)의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대체할 수 있다.)
-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 (5) 기타 우리 공사가 입찰공고시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 차.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 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낙찰자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우리 공사가 위반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 공사가 발주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 위반사실 통보 1건당(배치계획 위반에 해당되는 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0.12점씩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에 입찰참가한 후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우리 공사가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 카. 실제 계약 이행시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당시의 공사참여 지분율,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감점한다.

3.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5	평점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

- 가.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상위 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2. 등록내용에 따른다.
- 다.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발주공사	참여업체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1~4등급	(생략)						
5등급	4.6	4.7	4.8	4.9	5.0	5.0	5.0
6등급	4.5	4.6	4.7	4.8	4.9	5.0	5.0
7등급	4.4	4.5	4.6	4.7	4.8	4.9	5.0

- 라.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마.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 바. 토건업으로 등록한 자는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되며, 토목 및 건축공사를 각각 등록한 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 사.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업종공사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업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심사점수
공동수급업체 구성	3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합산한 결과에 따른 점수

- 가.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란 계약부서의 장이 중소기업과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대표자 외 중소기업 구성원 공사참여지분율			
	10%미만(단독입찰 포함)	10%이상~15%미만	15%이상~20%미만	20%이상
300억원 미만	2.2	2.6	2.8	3

- 주) 1.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판단하며, 중소기업 중앙회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평가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입찰금액	60	· 균형가격 미만인 입찰금액 $\text{입찰금액심사점수} = \sqrt{1 - A \left(\frac{\text{투찰금액}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 \right)^2} \times \text{배점}$ ※ A계수 : 0.5 · 균형가격인 입찰금액 $\text{입찰금액심사점수} = \text{배점한도}$ · 균형가격 초과인 입찰금액 $\text{입찰금액심사점수} = \sqrt{1 - B \left(\frac{\text{투찰금액}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 \right)^2} \times \text{배점}$ ※ B계수 : 0.5

가. 입찰금액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예정가격과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상기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산식의 제공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가.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 품질제고, 안전확보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가. 단가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cdot \text{단가심사점수} = \text{입찰금액 배점한도의 } -20\% \times \left(1 - \frac{\text{단가점수}}{100} \right)$$

나.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cdot \text{단가점수} = \sum (\text{세부공종별가중치} \times \text{세부공종별 단가점수})$$

(1) 단가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세부공종별 기준단가의 $\pm 19\%$ 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3)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설계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중치 보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0.000001씩 차례로 보정한다.
- ② 가중치가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 ③ 가중치와 세부공종금액이 모두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설계내역서 상의 순서대로 보정한다.

다.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이윤,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및 세부공종 등은 단가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제외한다.

라. 단가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2-2.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감점)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6 5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A:20%이상 B:10%이상	1 0.5	
하도급 할 공사의 총 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 금액의 비율	A:77%미만 B:77%이상~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3 4 5 6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하도급대금직불 계획	A:35%이상 B:30%이상	1.0 0.5	
계		14	

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에

의해 심사하며, 평점 합계가 14점 미만인 경우 -2점을 감점한다.

나.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상기 다.(3)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낙찰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우리 공사가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 공사가 발주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해당 낙찰자가 참가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획심사점수를 감점한다.

(1) 매 하도급계획 위반사실 통보 1건당(위반한 하도급계약 건별로 1건으로 산정) 해당 낙찰자의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0.2점을 감점한다.

(2)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10%를 초과하여 변경한 경우 10% 범위를 초과한 비율에 따라 해당 낙찰자의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초과비율	±10%초과 ~ ±20%이내	±20초과 ~ ±30%이내	±30%초과
감 점	0.1	0.2	0.3

(3) 실제 계약 이행시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당시의 공사 참여지분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감점한다.

라. 상기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건설인력고용 심사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등 급	심사점수
건설인력고용	0.4	고용탄력성	A. 1등급	0.4
			B. 2등급	0.32
			C. 3등급	0.24
			D. 4등급	0.16
			E. 5등급	0.08
			F. 6등급	0
		근로기준법준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2건	0.08
			B. 3~4건	0.16
			C. 5~6건	0.24
			D. 7~8건	0.32
			E. 9건 이상	0.4

가. 건설인력고용 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고용탄력성' 심사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심사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서 산정한 입찰 참가업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준수' 수준을 심사에 적용한다.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 (1) 고용탄력성 심사는 입찰참가업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라 우리 공사가 작성한 고용탄력성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 (2)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참가업체의 본사와 입찰참가업체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4)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 (6)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 (7)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다. '근로기준법준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 (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참가업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기간동안 입찰참가업체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참가업체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삭 제>

- (5) '근로기준법준수' 심사점수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심사점수 범위 내에서만 감점한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 건설안전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사망 만인율	0.3	$\cdot \text{심사점수} = \text{배점} - \left(\frac{\text{배점}}{2} \times \frac{\text{해당업체 가중평균 사망만인율}}{\text{건설업 가중평균 사망만인율}} \right)$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0.3	$\cdot \text{심사점수} = \text{배점} - \left(\frac{\text{배점}}{2} \times \frac{\text{해당업체 가중평균 재해율}}{\text{건설업 가중평균 재해율}} \right)$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점수 <table><tr><th>위반 건수</th><th>감점</th></tr><tr><td>1건</td><td>0.06</td></tr><tr><td>2건</td><td>0.12</td></tr><tr><td>3건</td><td>0.18</td></tr><tr><td>4건</td><td>0.24</td></tr><tr><td>5건 이상</td><td>0.3</td></tr></table>	위반 건수	감점	1건	0.06	2건	0.12	3건	0.18	4건	0.24	5건 이상	0.3
위반 건수	감점													
1건	0.06													
2건	0.12													
3건	0.18													
4건	0.24													
5건 이상	0.3													

가.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참가업체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cdot \text{사망만인율} = \frac{\text{사망자 수}}{\text{상시 근로자 수}} \times 10,000$$

(1)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업체(B)의 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사망자에서 제외한다.

(3)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cdot \text{상시 근로자수} = \frac{\text{연간국내공사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월평균임금} \times 12}$$

가)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다.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cdot \text{재해율} = \frac{\text{재해자 수}}{\text{상시 근로자 수}} \times 100$$

(1)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재해자 수 산출 기준과 방법은 사망자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3)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종합건설업자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

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 (3)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사망만인율, 재해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심사점수 세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 $\times$ 0.5 +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times$ 0.3 +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times$ 0.2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재해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만 감점한다.

바. 계약부서의 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공정거래 심사

가. 공정거래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나. 상호협력평가 점수

심사항목	배점	등 급	심사점수
상호협력평가	0.4	A. 95점 이상	0.4
		B. 90점 이상 95점 미만	0.36
		C. 80점 이상 90점 미만	0.32
		D. 70점 이상 80점 미만	0.28
		E. 60점 이상 70점 미만	0.24
		F. 60점 미만	0.2

- (1) 상호협력평가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한다.
- (2)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31일 공표하는 업체별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 공표된 상호협력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심사점수(F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 (3)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심사하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점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심사항목	등 급		감점
	행위유형	조치정도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0.1
		B. 과징금 10억미만	0.12
		C. 과징금 10억이상 30억미만	0.14
		D. 과징금 30억이상	0.16
		E. 법인고발	0.18
		F. 법인 및 개인고발	0.2
	하도급법 위반 행위	A. 시정명령	0.08
		B. 과징금	0.12
		C. 고발	0.16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0.06
		B. 과징금	0.1
		C. 고발	0.12

-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업체가 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상호협력평가 점수의 배점을 넘지 못한다.

(5)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지역경제 기여도

가.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지분율을 심사한다.

나. 지역업체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이 하되, 배점은 0.6점으로 한다.

$$\cdot \text{점수} = \text{배점} \times \frac{\sum \text{지역업체 공사참여지분율}(\%)}{30\%}$$

* 단, 우리 공사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 해당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10%~ 40% 범위 내에서 상기 산식의 기준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별표5]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제출서류명	발행기관	비 고
참가자격 등	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등	신청자	공동사 전체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신청자	공동사 전체
	3. 종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서식1>
	4.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별지서식2>
	5. 업체현황조서 확인서	관련협회	
	6.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별지서식3>
시공실적	7. 시공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사전심사기준 <별표5>
배치 기술자	8.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9. 배치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건설 기술자 경력증명서 중 택1	관련협회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1> 또는 협회제공 양식
	10.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계약서 (공공기관 발주공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관련협회, 발주기관	
	11. 배치기술자 재직증명서	신청자	
	12. 배치기술자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관련기관	국민연금, 고용· 건강·산재보험 中 택1
하도급 계획	13. 하도급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건설인력 고용	14.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삭 제>
	15.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횡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삭 제>
건설안전	16. 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7. 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8.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	19.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점수 확인서	국토교통부, 관련협회	
	2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 주) 1. 상기 목록 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순위별 목록표를 작성·첨부
 2. 자기평가기술서는 각 심사항목별로 점수와 산출근거를 명시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서류는 구성원별이 아닌 심사항목 순으로 편철
 4. 배치기술자 관련서류(8~12번) 및 하도급 계획(13번)은 입찰 후 낙찰자 결정시까지 제출

<별지서식1>

간이형 종합심사 신청 및 정보수집활용 동의서

- 공 사 명 :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간이형 종합심사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불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불임 자료에 의거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를 위한 불임자료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의 정보수집과 활용에 동의합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귀 공사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 공사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사)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사용인감)

- 불 임
1. 자기평가기술서 1부
 2. 제출서류목록표상 제출서류 각 1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내용	이 행 방 식					
	토 목 (100%)					
	건 축 (100%)					
	기 타 (100%)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시	공 능 력 공 시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	공사참여지분율 (%)					
⑦	시 공 비 율 (%)					
⑧ 업 종 등	토,건 등 순위					
	보유면허 및 번호					
⑨	지역업체여부: O, X (주된 영업소 소재지)		O (충북)	X (경남)		
⑩ 기 타 사 항	전 화 번 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에서 “이행방식”란은 ‘공동’, ‘분담’ 중 택1하고, “내용”에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면허를 감안하여 공사참여지분율을 기재할 것. 2. 해당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단독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						

<별지서식3>

자기평가기술서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 심사점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시공비율을 반영한 점수를 기재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총 괄

1) 공사수행능력

합 계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2) 사회적 책임

합 계	건설인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고용 탄력성	근로기준법 준수	사망 만인율	재해율	공정거래 관련법준수	상호협력 평가점수	

3) 계약신뢰도

합 계	배치기술자 배치계획 위반	하도급계획 위반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위반	시공계획 위반

다. 공사수행능력 분야 자기평가기술

1) 시공실적

구 분		“A” 社	“B” 社	“C” 社	합계
동일공사 실적	3년미만실적				
	3년이상 5년미만실적				
	5년이상실적				
	자기평가점수				
일반공사 실적	최근5년간 동일업종(또는 동일공종그룹) 실적총액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 ‘동일공사 실적’ 또는 ‘일반공사 실적’ 중 해당 공사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

2) 배치기술자

구 분		“A” 社	“B” 社	“C” 社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기타직위 근무일수				
	자기평가점수				
	소계				
점수산출근거					

3)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공동수급업체 구성현황			합계
			“A” 社	“B” 社	“C” 社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 비율	심사 자료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공사참여지분율의 합산 결과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공사참여지분율의 합산 결과에 따른 점수 기재			
점수산출근거						

라. 사회적책임 분야 자기평가기술

1) 건설인력고용

① 고용탄력성

구 분		“A” 社	“B” 社	“C” 社	합계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근로기준법준수

구 분		“A” 社	“B” 社	“C” 社	합계
근로기준법준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2) 건설안전

① 사망만인율

구 분		“A” 社	“B” 社	“C” 社	합계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재해율

구 분		“A” 社	“B” 社	“C” 社	합계
재해율	재해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3) 공정거래

① 상호협력평가

구 분		“A” 社	“B” 社	“C” 社	합계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공정거래관련법준수

구 분			“A” 社	“B” 社	“C” 社	합계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a)				
	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b)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c)				
소계(a+b+c)						
점수산출근거						

4) 지역경제 기여도

구 분		“A” 社	“B” 社	“C” 社	합계
지역경제 기여도	공사참여지분율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역업체 여부				
	지역업체 공사참여지분율 합계				
점수산출근거					

